

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-9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3. 6. .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실무반 편성인원이 과다하여 재해발생시 현장 대처인력이 부족(비상체제시총괄운영반장외56명⇒총괄운영반장외29명으로 축소)
- 직제의 일부 불부합 사항을 보완

2. 주요골자

- 가. 재해기간(여름철, 겨울철)중에는 상하수과와 도로교통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4시간 상황근무토록 함.(안 제4조).
- 나. 재해대책본부 조직표 정비.(안 별표 1).
- 다. 실무반의 편성 및 분담사무표 정비.(안 별표 2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조제2항중 “당직자”를 “상황근무자”로 한다

①평상시 근무체제는 상하수과 소속 직원으로 상황을 유지토록 하되, 우기인 매년 6. 15 ~ 10. 15기간과 강설기인 매년 12. 1 ~ 익년 3. 15기간 사이에는 도로교통과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24시간 지속하여 상황근무토록 한다. 다만, 대비체제시에는 실무반을 편성 운영한다.

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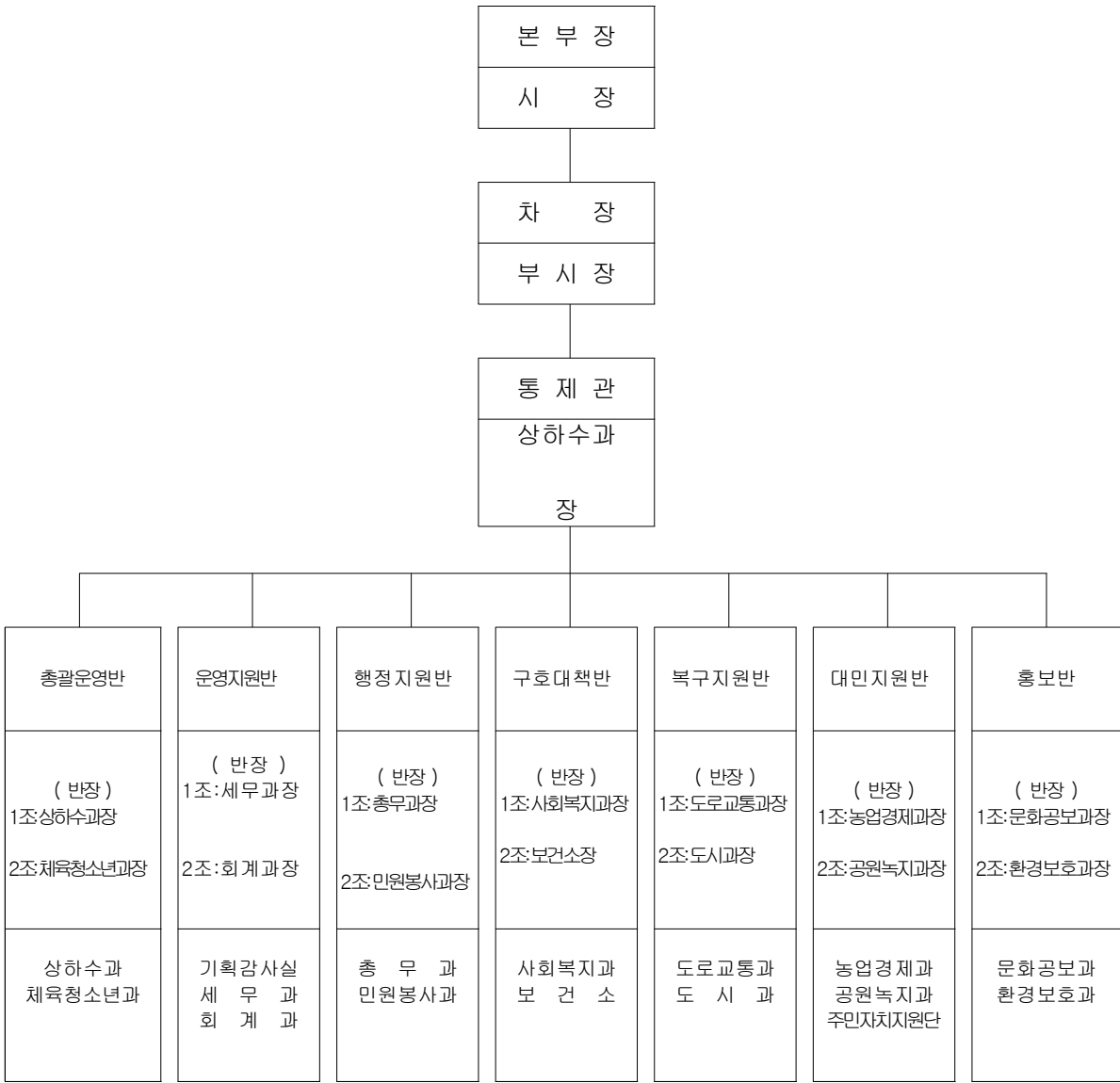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평상시 근무체제)①평상시 근무체제는 <u>건설과 소속직원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상황유지</u> <u>토록 하되 매년 6. 15 ~ 10. 15기간 사이에는</u> <u>24시간 지속하여 당직근무토록 하여야 한다.</u> <u>단, 대비체제시에는 실무반이 편성 운영되며</u> <u>이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로 대체한다.</u> ②당직자는 재해대책본부상황실과 상하수와 사 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	제4조(평상시 근무체제)①평상시 근무체제는 <u>상</u> <u>하수와 소속 직원으로 상황을 유지토록 하되</u> <u>우기인 매년 6. 15 ~ 10. 15.기간과 강설기인</u> <u>매년 12. 1 ~ 익년 3. 15.기간 사이에는 도로</u> <u>교통과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24시간 지속하</u> <u>여 상황근무토록 한다. 다만, 대비체제시에는</u> <u>실무반을 편성 운영한다.</u> ② <u>상 황 근 무 자</u> ----- -----.

(별표 1)

동두천시 재해대책본부 조직표



(별표 2)

실무반 편성 및 분장사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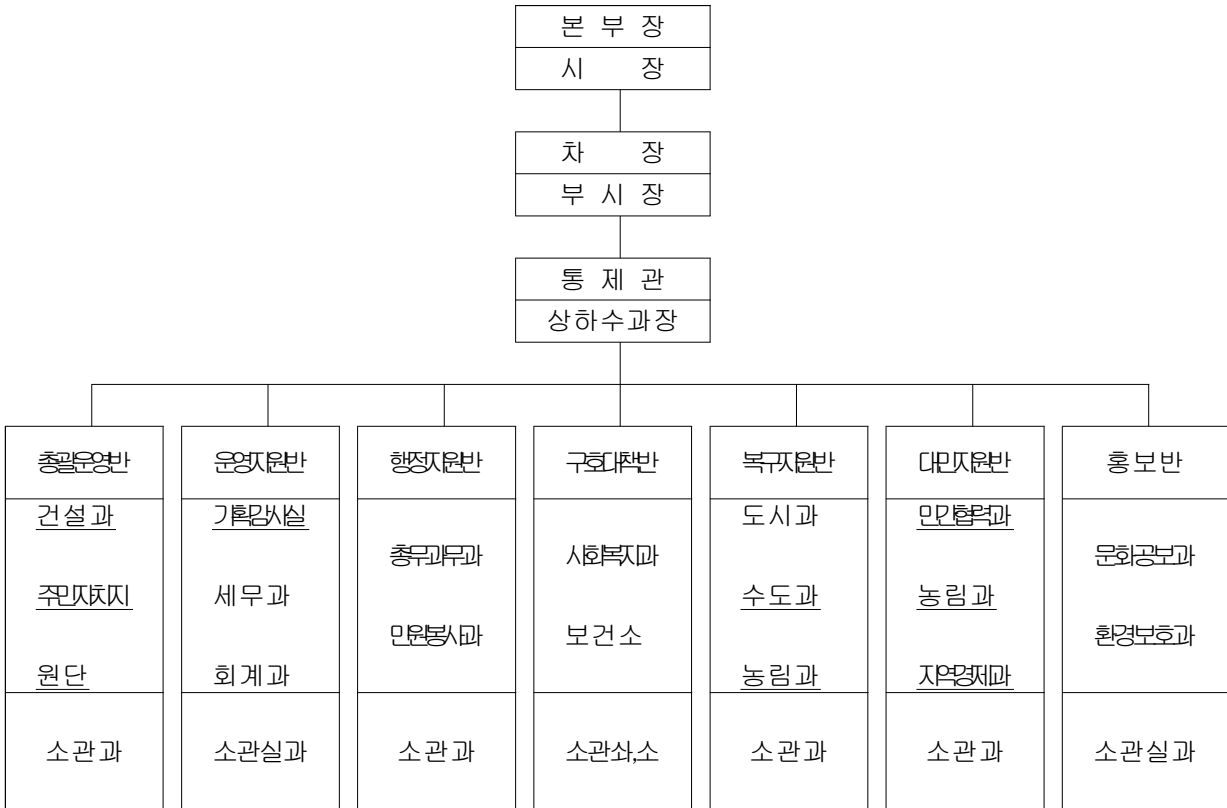
실무 반별	실무반장 (1개조 7명)	조장 (1개조 7명)	조원			분장사무
			준비체제시	경계체제시	비상체제시	
7개반	1개조 7명	1개조 7명	1개조 8명	1개조 13명	1개조 16명	
총괄 운영반	상하수과장 (체육청소년과장)	체육진흥담당 (방재담당)	상하수과 2 (상하수과 2)	상하수과 2 (상하수과 1, 체육청소년과 1)	상하수과 2 체육청소년과 1 (상하수과 2 체육청소년과 1)	·본부운영 총괄 ·상황판정리 등 상황관리 ·보고서작성 배부 ·상황실 물품운영 ·경기도및중앙재해대책본부와 의 연락 ·피해집계 총괄
운영 지원반	세무과장 (회계과장)	기획법무담당 (도세담당)	기획감사실 1 (세무과 1명)	기획감사실 1 회계과 1 (기획감사실 1 세무과 1)	세무과 1 회계과 1 (기획감사실 1 회계과 1)	·상황보고작성에 따른 총괄운 영반지원 ·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·중요인사 의견
행정 지원반	총무과장 (민원봉사과장)	민원담당 (총무담당)	총무과 1 (민원봉사과 1)	총무과 1 민원봉사과 1 (총무과 1 민원봉사과 1) [경찰서,세무서]	총무과 1 민원봉사과 1 (총무과 1 민원봉사과 1) [경찰서,세무서]	·민심동향, 미담수범사례, 민원 에 관한사항 ·유관기관, 단체의 협조사항 ·복구에 필요한 행정인력 및 주민동원에관한 사항
구호 대책반	사회복지과장 (보건소장)	보건행정담당 (사회복지담당)	사회복지과 1 (보건소 1)	사회복지과 1 보건소 1 (사회복지과 1 보건소 1) [적십자사]	사회복지과 1 보건소 2 (사회복지과 1 보건소 2) [적십자사]	·구호물자 확보 및 소요량 파악 ·이재민수용, 구호상황의 파악 ·의연금품에 관한사항 ·의료 및 방역
복구 지원반	도로교통과장 (도시과장)	도시행정담당 (도로행정담당)	도로교통과 1 (도시과 1)	도로교통과 1 도시과 1 (도로교통과 1 도시과 1) [한전,한국통신]	도로교통과 1 도시과 2 (도로교통과 2 도시과 1) [한전,한국통신]	·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·군의 협조에 관한 사항 ·인명구조 사항 ·민방위대, 수방기동대 배치
대민 지원반	농업경제과장 (공원녹지과장)	공원녹지담당 (경제담당)	농업경제과 1 (공원녹지과 1)	농업경제과 1 공원녹지과 1 (농업경제과 1 공원녹지과 1) [소방서,군부대]	농업경제과 1 공원녹지과 1 (농업경제과 1 공원녹지과 1) [소방서,군부대]	·대민지원사항 총괄 ·경제피해에 관한 사항 총괄 ·피해지역 물가안정 도모
홍보반	문화공보과장 (환경보호과)	환경관리담당 (공보담당)	문화공보과 1 (환경보호과 1)	문화공보과 1 (환경보호과 1) [교육청,우체국]	문화공보과 1 (환경보호과 1) [교육청,우체국]	·국민행동요령 등 각종 홍보사 항 ·보도매체의 지원안내 및 정보 제공 등

※ 재해발생시 신속한 상황실운영과 교대근무를 위하여 2개조로 편성하며, ()내는 2조 편성대상임

(별표 기존서식)

(기존 별표 1)

동두천시 재해대책본부 조직표



(기존 별표 2)

실무반 편성 및 분장사무

실무 반별	실무반장 (7명)	조장 (7명)	조원			분장사무
			준비체제(가)	경계체제(나)	비상체제(다)	
총괄 운영반	주인자치 지원단장 민원봉사 과장	주인자치지원 단 소속6급	건설과소속 6급 1, 직원 1 주인자치지원단 소속 6급 1, 직원 1	건설과소속 직원 3	건설과소속 직원 3	·본부운영 총괄 ·상황판정리 등 상황관리 ·보고서작성 배부 ·상황실 물품운영 ·경기도및중앙재해대책본부와 의 연락 ·피해집계 총괄
운영 지원반	세무과장 회계과장	가림과소속 소속6급	가림과소속 6급 1, 직원 1 세무과소속 6급 1, 직원 1 회계과소속 6급 1, 직원 1	가림과소속 6급 1, 직원 2 세무과소속 6급 1, 직원 1 회계과소속 6급 1, 직원 1	가림과소속 6급 1, 직원 2 세무과소속 6급 1, 직원 2 회계과소속 6급 1, 직원 2	·상황보고작성에 따른 총괄운 영반지원 ·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·중요인사 의견
행정 지원반	총무과장 민원봉사 과장	총무과 소속6급	총무과소속 6급 1, 직원 1 민원봉사과소속 6급 1, 직원 1	총무과소속 6급 1, 직원 2 민원봉사과소속 6급 1, 직원 1 [경찰서세무세]	총무과소속 6급 1, 직원 2 민원봉사과소속 6급 1, 직원 1 [경찰서세무세]	·민심동향, 미답수범사례, 민원 에 관한사항 ·유관기관, 단체의 협조사항 ·복구에 필요한 행정인력 및 주민동원에관한 사항
구호 대응반	사회복지 과장 보건소장	사회복지과 소속6급	사회복지과소속 6급 1, 직원 1 보건소소속 6급 1, 직원 1 자영체제소속 6급 1, 직원 1	사회복지과소속 6급 1, 직원 2 보건소소속 6급 1, 직원 2 자영체제소속 6급 1, 직원 1 [적십자사]	사회복지과소속 6급 1, 직원 2 보건소소속 6급 1, 직원 2 자영체제소속 6급 1, 직원 1 [적십자사]	·구호물자 확보 및 소요량 파 악 ·이재민수용, 구호상황의 파악 ·의연금품에 관한사항 ·의료 및 방역
복구 지원반	도시과장 수도과장	도시과 소속6급	도시과소속 6급 1, 직원 1 수도과소속 6급 1, 직원 1 농림과소속 6급 1, 직원 1	도시과소속 6급 1, 직원 1 수도과소속 6급 1, 직원 1 농림과소속 6급 1, 직원 1 [농림축산검역]	도시과소속 6급 1, 직원 1 수도과소속 6급 1, 직원 1 농림과소속 6급 1, 직원 1 [농림축산검역]	·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·군의 협조에 관한 사항 ·인명구조 사항 ·민방위대, 수방기동대 배치
대민 지원반	농림과장 민원협력 과장	농림과 소속6급	농림과소속 6급 1, 직원 1 민원협력과소속 6급 1, 직원 1	농림과소속 6급 1, 직원 1 민원협력과소속 6급 1, 직원 1 [소방서민방위대]	농림과소속 6급 1, 직원 1 민원협력과소속 6급 1, 직원 1 [소방서민방위대]	·대민지원사항 총괄 ·경제피해에 관한 사항 총괄 ·피해지역 물가안정 도모
홍보 반	문화관광 실장 환경보호 과장	문화관광실 소속6명	문화관광실소속 6급 1, 직원 1 환경보호과소속 6급 1, 직원 1	문화관광실소속 6급 1, 직원 1 환경보호과소속 6급 1, 직원 1 [교정청유체제]	문화관광실소속 6급 1, 직원 1 환경보호과소속 6급 1, 직원 1 [교정청유체제]	·국민행동요령 등 각종 홍보사 항 ·보도매체의 지원안내 및 정보 제공 등

※ 대비체제별 근무조는 2개조로편성할 수 있으며, 상기 편성인원을 1개조 편성시 해당되는 기준임.